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모든 경우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乙의 현금을 훔친 후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甲을 폭행하여 위 봉투에 넣어놓았던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이므로 乙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밤늦게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양 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야간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공사대금 채권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④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4】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취상태의 자동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
- ②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 ③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

【문 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새벽 5시경 A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회칼로 A를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A를 결박한 채로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A가 결박을 풀고 도주하기에 A를 쫓아가 시비하다가 회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은 A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부근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A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준강도범을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도’를 할 목적은 있었던 것이므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주차된 A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A 및 그 친구인 B와 대치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 B를 폭행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이 성립한다.

【문 6】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추후 당초의 공무원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조합임원이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③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어느 정도라도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타짜인 피고인은 정마담과 공모하여 재력가 A와 그 친구인 B, C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저녁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셋다’ 도박을 하였는데, C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계속 도박을 하다가 자정이 넘을 무렵부터 화투를 교체하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A, B가 들고 있는 화투 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A로부터 3억 원, B로부터 2억 원의 도금을 획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원래 사기도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자정까지는 정상적인 도박행위도 하였으므로 도박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② C에 대하여도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A, B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 ④ A,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법익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8】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중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③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다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명예훼손죄의 경우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④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문1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고소의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법하다.
-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문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후 그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법상 형사합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13】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문14】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15】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16】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구형대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적의 원인이 된다.

【문17】 증거동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8】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② 법원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1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